

『대만, 수소염화불화탄소 소비 관리 규정 개정안』 심층분석 보고서

2025. 7.

TBT 통보 여부	통보	HS Code	전제품
통보국	대만	전년도 수출규모 (천불)	21,075,785
작성기관	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	작성자 문의처	tbt@kotica.or.kr

[목 차]

1. 규제 개요	1
2. 개정 세부내용	2
3. 관련 법령 및 표준	8
붙임. 규제 참고자료	9

1

규제 개요

- (도입배경 및 목적) 대만 환경부에서는 몬트리올 의정서 및 키갈리 부속서 기준에 맞춰 수소염화불화탄소(Hydrochlorofluorocarbon, HCFC)*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표함

* 냉매·발포제 등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물질로 오존층파괴지수가 낮아 염화불화탄소의 대체 물질로 개발되었으나, 높은 지구온난화지수(Global Warming Potential, GWP)를 가져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물질

- (규제요지) 동 개정안에서는 ①적용범위 확대 및 명확화, ②면제용도 수입, ③사용·수입 현황 보고, ④위반 시 조치, ⑤관련 조항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함

TBT 통보번호	▪ TPKM/563	통보일	▪ 2025년 6월 27일
		고시일	▪ 2025년 6월 12일
규제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수소염화불화탄소 소비 관리 규정 개정안 초안 ▪ Draft Amendments to the Regulations for Consumption Management of Hydrochlorofluorocarbons 		
규제부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환경부 ▪ Ministry of Environment 		
요구사항 유형	▪ 국제협약 준수		
제·개정 상태	▪ 개정 초안		
채택일	▪ 추후 결정		
의견수렴 마감일	▪ 2025년 8월 26일		
발효일	▪ 추후 결정		
준수기한	▪ -		

- (적용대상 및 수출규모)

적용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수소염화불화탄소 및 이를 함유한 제품 또는 장비 ▪ Hydrochlorofluorocarbons; products or equipment containing hydrochlorofluorocarbons 		
적용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수소염화불화탄소 및 이를 함유한 화합물, 제품 또는 장비 		
對발행국 수출액 (전년기준, 천불)	▪ 21,075,785	HS Code	▪ 전제품

□ (개정 세부내용)

- (적용범위 확대 및 명확화) 동 개정안에서는 HCFCs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제품 또는 장비도 규제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생산량, 소비량, 이행실적 등의 정의를 명확화함
 - 생산량: 국내 HCFCs 생산량-(제조 과정에서 회수되거나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된 양+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승인된 기술을 사용하여 폐기된 화학물질의 양)
 - 소비량*: HCFCs 생산량+수입량-수출량
 - * 단,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승인된 면제용도의 양은 포함되지 않음
 - 이행실적: 사용업체의 사용량 또는 공급업체의 수입 통관, 판매 또는 제조 실적, 재고량으로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있으며 중앙주무기관의 검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

[표 1] 신규대조표(적용범위 확대 및 명확화)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소염화불화탄소 소비 관리 규정</p> <p>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.</p> <p>1. 수소염화불화탄소(HCFCs):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 C 제1류 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 중 중앙 관할 기관이 공표한 물질을 말하며, 원료, 재활용 또는 재생 형태의 화합물 또는 혼합물을 포함한다. <u>단, 제품(운송 및 보관 기능을 갖춘 용기 제외)에 존재하는 물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.</u></p> <p>(신설)</p> <p>2. 생산량: <u>국내 생산량에서</u> 제조 과정에서 회수되거나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된 양과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승인된 기술을 사용하여 폐기된 화학물질의 양을 차감한 순 생산량을 의미한다. 단, 재활용 및 재사용된 화학물질의 양은 생산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.</p> <p>3. 소비량: <u>생산량에</u>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순 소비량을 의미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소염화불화탄소 관리 규정</p> <p>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.</p> <p>1. 수소염화불화탄소(HCFCs):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 C 제1류 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 중 중앙 관할 기관이 공표한 물질을 말하며, 원료, 재활용 또는 재생 형태의 화합물 또는 혼합물을 포함한다. <u>(후단 문장 삭제)</u></p> <p>2. HCFCs 함유 제품 또는 장비: 전항의 수소염화불화탄소 화합물을 함유한 상품, 부품 및 해당 부품을 포함한 시스템을 의미한다.</p> <p>3. 생산량: <u>HCFCs의 국내 생산량에서</u> 제조 과정에서 회수되거나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된 양과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승인된 기술을 사용하여 폐기된 화학물질의 양을 차감한 순 생산량을 의미한다. 단, 재활용 및 재사용된 화학물질의 양은 생산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.</p> <p>4. 소비량: <u>HCFCs 생산량에</u>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순 소비량을 의미한다. 그러나</p>

현행	개정안
4. (생략) 5. (생략) 6. (생략) 7. 이행실적: 사용업체의 사용량 또는 공급업체의 수입출하 또는 제조실적으로,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있고 중앙주무기관의 검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. 8. (생략) 9. (생략)	<u>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승인된 면제용도의 양은 포함되지 않는다.</u> 5. (현행 제4항과 같음) 6. (현행 제5항과 같음) 7. (현행 제6항과 같음) 8. 이행실적: 사용업체의 사용량 또는 공급업체의 수입 통관, <u>판매 또는 제조 실적, 재고량으로</u> ,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있으며 중앙주무기관의 검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. 9. (현행과 제8항과 같음) 10. (현행과 제9항과 같음)

- (면제용도 수입)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승인된 면제용도로 해당하는 HCFCs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수입 신청 및 검토 절차, 승인 일정 등을 관련 내용을 신설함
 - 면제용도의 HCFCs를 수입하고자 하는 공급업체 또는 사용업체는 ①신청서, ②설립 증명서, ③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서, ④대체 불가 사유, ⑤필요 수량 명세서 및 증빙 서류 등을 중앙 관할 당국에 제출 및 신청하여야 함

[표 2] 신규대조표(면제용도 수입)

현행	개정안
수소염화불화탄소 <u>소비 관리</u> 규정 (신설)	수소염화불화탄소 <u>관리</u> 규정 제10조 전 조항의 규정 외에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승인된 면제 용도로 HCFCs를 수입하기 위해 공급업체 또는 사용업체는 <u>매년 1월과 7월 말에 다음 정보와 서류를 중앙 관할 당국에 제출하여 면제용도 수입 검토를 신청해야 한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청서 2. 관할 정부 기관에서 승인 및 등록된 설립 증명서 3. HCFCs의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 4. HCFCs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 5. 필요한 수량에 대한 명세서 및 증빙서류 6. 중앙 관할 당국이 지정한 기타 서류 중앙 관할 당국은 매년 4월과 10월 말에 신청 기업에 대한 면제된 사용 수입 수량을 승인하여야 한다.

- (사용·수입 현황 보고) 면제용도 수입 관련 조항이 동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면제용도의 HCFCs를 수입하는 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면제용도로 수입 또는 사용된 현황을 보고하여야 함
 - 현황 자료에는 수입 또는 사용된 HCFCs 품목명, 수량, 사용 제품 정보 또는 이전 반기 동안의 HCFCs 판매량, 조달량, 재고 수준, 배출량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

[표 3] 신규대조표(사용·수입 현황 보고)

현행	개정안
<p>수소염화불화탄소 소비 관리 규정</p> <p>제16조 할당량을 보유한 사용업체는 매년 1월, 4월, 7월, 10월 말까지 중앙 관할 기관에 전 분기의 HCFCs 품목명 및 구매 수량, 사용량, 사용 설명, 재고 수준 및 기타 중앙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검증 가능한 증빙 문서와 함께 보고해야 한다.</p> <p>할당량을 보유한 공급업체는 매년 1월, 4월, 7월, 10월 말까지 전 분기 동안 수입 또는 제조한 HCFCs 품목명 및 수량, 판매 수량, 재고 수준 및 기타 중앙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검증 가능한 증빙 문서와 함께 보고해야 한다.</p> <p>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할 경우 해당 분기의 이행 실적은 0으로 간주된다. (신설)</p> <p>보고된 문서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중앙 관할 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.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.</p>	<p>수소염화불화탄소 관리 규정</p> <p>제14조 (현행과 동일)</p> <p>(현행과 동일)</p> <p>(현행과 동일)</p> <p>제10조에 따라 면제된 사용·수입 승인을 얻은 기업은 매년 1월과 7월 말에 수입 또는 사용된 HCFCs 품목명, 수량, 사용 제품 정보 또는 전 반기 동안의 HCFCs 판매량, 조달량, 재고 수준, 배출량 및 기타 중앙 관할 기관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와 함께 검증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(현행과 동일)</p>

- (위반 시 조치) HCFCs 및 이를 포함한 화합물뿐만 아니라, 이를 포함한 제품과 장비도 위반 시 조치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킴

- 수입 위반으로 인해 명시된 물품의 처리와 관련된 비용은 수입 위반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함

[표 4] 신구대조표(위반 시 조치)

현행	개정안
<p>수소염화불화탄소 소비 관리 규정</p> <p>제22조 이 규정에 따라 승인 없이 수입된 HCFCs는 관세법에 명시된 기한 내에 반송되어야 한다.</p> <p>제23조 압수된 HCFCs의 경우, 중앙 관할 당국은 HCFCs 회수, 정화, 재사용, 임시 보관, 파기를 수행할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거나 위탁해야 한다.</p> <p>(신설)</p>	<p>수소염화불화탄소 관리 규정</p> <p>제20조 이 규정에 따라 승인 없이 수입된 HCFCs 또는 HCFCs 함유 제품 또는 장비의 경우 아직 통관되지 않은 경우 관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반송되어야 한다.</p> <p>수입 규정을 위반하고 전항에 명시된 HCFCs 또는 HCFCs 함유 제품 또는 장비 압수물은 회수, 재정제, 재사용, 임시 보관, 판매, 파기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처리한다.</p> <p>전항에 명시된 물품의 처리와 관련된 비용은 수입 위반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.</p>

- (관련 조항 정비) HCFCs 생산 감축 일정 및 기한이 지난 조항을 삭제하고, 이를 최신화함
 - 단, 현행 HCFCs 생산 감축 일정 및 기한과 비교하여 동 개정안에서 실질적으로 신규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없음

[표 5] 신구대조표(관련 조항 정비)

현행	개정안
<p>수소염화불화탄소 소비 관리 규정</p> <p>제3조 HCFCs의 국가기준소비량은 638.156 ODP 미터톤으로 설정한다. HCFCs 소비 감축 일정 및 해당 연간 한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2004년 1월 1일부터 연간 소비량은 기준치의 65 % 즉 414.801 ODP 미터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.</u></p> <p>2. <u>2010년 1월 1일부터 연간 소비량은 기준치의 25 %, 즉 159.539 ODP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3. <u>2015년 1월 1일부터 연간 소비량은 기준치의 10 % 즉 63.816 ODP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4. <u>2020년 1월 1일부터 연간 소비량은 기준치의</u></p>	<p>수소염화불화탄소 관리 규정</p> <p>제3조 HCFCs의 국가기준소비량은 638.156 ODP 미터톤으로 설정한다. HCFCs 소비 감축 일정 및 해당 연간 한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1, 2020년 1월 1일부터 연간 소비량은 기준치의</p>

현행	개정안
<p>0.5 %, 즉 3.191 ODP 톤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냉동 또는 공조장비 유지보수 목적으로만 한정된다.</p> <p>5. 2030년 1월 1일부터 HCFCs 소비량은 0이어야 한다.</p> <p>제4조 HCFCs의 국가기준생산량은 638.156 ODP 미터톤으로 설정한다. HCFCs 생산 감축 일정 및 해당 연간 한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2004년 1월 1일부터 연간 생산량은 전단(제3조)의 각 호에 지정된 국가기준생산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.</u></p> <p>2. <u>2010년 1월 1일부터 연간 생산량은 기준치의 25 %, 즉 159.539 ODP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3. <u>2015년 1월 1일부터 연간 생산량은 기준치의 10 %, 즉 63.816 ODP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4. 2020년 1월 1일부터 연간 생산량은 기준치의 0.5 %, 즉 3.191 ODP 톤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냉동 또는 공조장비 유지보수 목적으로만 한정된다.</p> <p>5. 2030년 1월 1일부터 HCFCs 생산량은 0이어야 한다.</p> <p>HCFCs 제조 공급업체는 상반기 및 하반기 생산계획을 각각 1월과 7월 말까지 중앙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 생산 계획에는 제조 수량,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하기 위해 공급되는 수량 및 수출 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제6조 HCFCs의 규제 용도 및 관리 일정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HCFCs가 발포제로 사용되는 경우: (1) <u>2011년 1월 1일부터 폴리우레탄 생산에 HCFC -141b의 사용이 금지된다.</u> (2) <u>2015년 1월 1일부터 발포제 용도에 대한 HCFCs의 할당이 중단되고, 2016년 1월 1일부터 발포제 용도의 HCFCs 사용이 금지된다.</u></p>	<p>0.5 %, 즉 3.191 ODP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냉동 또는 공조장비 유지보수 목적으로만 한정된다.</p> <p>2. 2030년 1월 1일부터 HCFCs 소비량은 0이어야 한다.</p> <p>제4조 HCFCs의 국가기준생산량은 638.156 ODP 미터톤으로 설정한다. HCFCs 생산 감축 일정 및 해당 연간 한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1. 2020년 1월 1일부터 연간 생산량은 기준치의 0.5 %(3.191 ODP 톤, 냉동 또는 공조장비 유지보수 목적으로 한정)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</p> <p>2. 2030년 1월 1일부터 HCFCs 생산량은 0이어야 한다.</p> <p>HCFCs 제조 공급업체는 상반기 및 하반기 생산계획을 각각 1월과 7월 말까지 중앙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 생산 계획에는 제조 수량,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하기 위해 공급되는 수량 및 수출 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제7조 HCFCs의 규제 용도 및 관리 일정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2016년 1월 1일부터 HCFCs가 발포제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2. HCFCs가 용매로 사용되는 경우(생산 및 세척 공정 포함):</p> <p>(1) 2011년 1월 1일부터 HCFC-141b의 사용이 금지된다.</p> <p>(2)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HCFC의 용매로 사용이 금지된다.</p> <p>3. HCFCs가 냉매로 사용되는 경우:</p> <p>(1) 2011년 1월 1일부터 냉각용량이 7.1 kW 미만인 신규 제조 창문형 에어컨(분할형 에어컨 포함)에서 냉매로 HCFC-22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.</p> <p>(2)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 제조된 냉동 장비, 에어컨 또는 새로 건설된 시설에서 냉매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대한 HCFC-22의 할당이 중단된다. 2016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사용이 금지된다.</p> <p>(3)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 제조된 냉동 장비, 에어컨 또는 새로 건설된 시설에서 모든 HCFC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.</p> <p>4. 2010년 1월 1일부터 스프레이 추진제로의 HCFCs 사용이 금지됨</p> <p>제1호의 (2)목 및 제3호의 (2)목의 규정 외에도, 중앙 관할 기관은 전 항에 명시된 관리 시점부터 통제 용도에 대한 사용자 기업의 할당량 배정을 중단하여야 한다.</p>	<p>2. 2020년 1월 1일부터 HCFCs가 용매(제조 및 세척 공정 포함)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된다.</p> <p>3. 2020년 1월 1일부터 HCFCs가 신규 장비 또는 시설의 냉매로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된다.</p> <p>2010년 1월 1일부터 스프레이 추진제로의 HCFCs 사용이 금지된다.</p> <p>중앙 관할 기관은 전 항에 명시된 관리 시점부터 통제 용도에 대한 사용자 기업의 할당량 배정을 중단하여야 한다.</p>

3

관련 법령 및 표준

(관련 법령)

- 수소염화불화탄소 소비 관리 규정(氟氯烴消費量管理辦法)¹⁾

1) <https://law.moj.gov.tw/LawClass/LawAll.aspx?pcode=00020052>

(규제원문 출처)

- ePing SPS&TBT Platform

- 원문링크: 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TPKM/25_04194_00_e.pdf, 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TPKM/25_04194_00_x.pdf